

부산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8. 11. 12. ~ 11. 16. <5일간 >
- 감 사 자 :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13명
- 감사대상 :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 결과

○ 모범 사례

연번	주 요 내 용
1	<p><‘힐링캠프’ 운영으로 공상 경찰관 소속감 제고 기여></p> <p>치안 현장에서 범인 피습·안전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관을 위한 ‘제주도 힐링캠프’를 기획·시행, 전문가 심리상담·자연치유·명상호흡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p>
2	<p><공사장 벽면 활용 홍보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 유공></p> <p>시내 총 51개 공사 현장에 위치한 벽면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통 홍보문안(깜빡이 단디! 정지선 단디! 등)을 게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 교통문화 개선에 노력</p>
3	<p><지역경찰 야간 대기시간 연장(2시간→3시간) 정착 기여></p> <p>’18년 9월부터 부산청 전 지역경찰 대상 대기시간 연장 시범운영 실시, 시범운영 전·후 112신고 평균출동 시간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관서별 적합한 운영방안을 고안하는 등 안정적인 대기시간 연장 운영에 기여</p>
4	<p><광역유치장 리모델링 추진으로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기여></p> <p>’18년 동안 약 3억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역유치장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 40년 경과되어 노후된 유치장에 남·여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고 환기가 용이한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p>

○ 처분 요구 사항

연번	주요 내용
1	<p><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 재배치 등 검토 필요 : 통보> 고속도로순찰대에 고정배차된 순찰차는 일시적 근무인원 대비 휴차되는 순찰차가 많은 반면 경찰서 교통외근 순찰차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역경찰 인원 증가에 따른 지역경찰관서 순찰차 수요도 지속 증가 중인 만큼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 재배치 검토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순찰차 운영방안 마련 필요</p>
2	<p><112신고 출동요소 지령 및 관리·감독 부적정 : 통보> ‘야간 출동업무수당 지침’ 등에 따라 Code2 112신고 등 경미 사건에 대한 출동지령 시 다수의 순찰차 출동은 지양하도록 하였음에도,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야간 경미신고에 다수의 순찰차를 지령하여 출동수당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재강조 및 관리 강화 필요</p>
3	<p><정보경찰 범죄정보 수집활동 부적정 : 주의·통보>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라 범죄정보는 직무상 또는 일상생활을 통해 취득한 범죄관련 사실을 제출해야 함에도, 일부 정보 경찰들은 이미 수사 부서에 접수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범죄내용을 범죄정보로 작성·제출하여 첩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p>
4	<p><지방경찰청장 지정 긴급자동차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통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는 교통법규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가 주어지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차량 등록 말소되었거나 소유권 이전된 차량이 계속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p>
5	<p><경찰공무원 휴직 업무 처리 부적정 : 경고·주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휴직을 원할 경우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휴직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일부 경찰관서는 가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첨부하였음에도 휴직 발령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p>
6	<p><개인보관 총포류 소지허가 취소대상자 관리 부적정 : 주의·통보>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류 업무담당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을 조회하여 총포류 소지자의 결격사유 발생 및 소지허가 기간 만료사실을 확인하고 소지허가 취소 등 조치해야 함에도, 일부 담당자들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결격사유 발생 및 허가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p>

연번	주요 내용
7	<p><KICS 사건접수 후 취소처리 부적정 : 통보> KICS 시스템 상 사건의 접수/입건 취소 기능은 오류입력이나 중복접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일부 수사관들이 정식 수사종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접수취소로 종결하는 사례가 있어 접수취소에 대한 세부유형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p>
8	<p><지하철경찰대 성폭력 사건 조사 규정 미준수 : 통보>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폭력사건 조사 시 피해 여성은 여성조사관이 조사(남성조사관은 서면 동의) 하고 필수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해야 함에도, 부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조사관이나 진술녹화시설이 없어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어 관련 인력·시설 보강 필요</p>
9	<p><체력검정 제외사유 확인 소홀 및 평가 부적정 : 경고·시정>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체력검정제외자 선정 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경찰관서 체력검정 담당자는 증빙자료 없이 체력검정 제외를 승인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p>
10	<p><PC단말기 등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불용처리 소홀 : 주의·통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자료소거 규정’ 등에 따라 PC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불용할 경우 저장자료를 전부 소거해야 함에도 일부 업무담당자는 PC·노트북 등을 불용하면서 소거하지 않고 경찰서 기계실에 보관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p>
11	<p><관서운영경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통보>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 지급 시 지급한도(전당 5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일부 업무담당자는 특정 행사에 대한 2,5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5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p>
12	<p><납품기일 연장 및 지체상금 미부과 등 계약업무 부적정 : 주의·시정>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의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일부 업무담당자는 신축공사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되었어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업체의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수용해주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p>
13	<p><시설부대비 예산 집행 부적정 : 경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 상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일부 예산담당자는 신축 공사와 관련성이 없는 등산화를 시설부대비로 구입하여 일부 지휘관들에게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p>